

'91년도 전기공급규정 개정내용(하)

1991년 10월 1일 시행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46조 [위약금]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 전기공작물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2~4. [생략]	제46조 [위약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1. 전기설비의 _____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제47조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본문 생략] 1. [생략] 2. 수용자가 수용장소내에 있는 당사의 전기공작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설하여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생략] 4. 전기공작물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 등에 의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5. [생략] ② 1~9호 [생략] 10. [신 설] ③ [생략] ④ 동일한 수용자가 제16조 [수급계약] 단서에 의하여 1수용장소에 2이상의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중 일부수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수용장소의 전부에 대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본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용자가 _____전기설비를 _____ 3. [현행과 같음] 4. 전기설비의 _____경우 5. [현행과 같음] ② 1~9호 [현행과 같음] 10. 동력자원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종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일한 수용자가 제16조 [수급계약] 단서에 _____ _____ 해당되거나 제14조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제1항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수용장소의 다른 수급계약체결분에 대하여도 전기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제한 불이행수용가의 제재규정화 ○ 불불폐지 수용에 대한 미수요금 회수 도모
제49조 [공급의 종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본문 생략] 1~2. [생략] 3. 당사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제49조 [공급의 종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본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당사의 전기설비에 _____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당사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수리, 변경 등 의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p> <p>5~7. [생략]</p> <p>② [생략]</p> <p>제52조 [설비의 손망설에 대한 배상]</p> <p>수용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수용 장소내에 있는 당사의 전기공작물·전기기기 기타의 설비를 손상 또는 당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셔야 합니 다.</p> <p>1~2. [생략]</p> <p>제54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p> <p>당사와 수용가간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당사가, 수용기측은 수용가가 각각 책임을 집니다.</p> <p>[이하 생략]</p> <p>제55조 [전기공작물 조사]</p> <p>① 당사는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 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조사합니다. 다만, 수용장소의 출입에 있어서 일반 용전기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 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 니합니다.</p> <p>② 제 1항에서 규정한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 합니다.</p> <p>[이하 생략]</p> <p>1~4. [생략]</p> <p>제56조 [조사의 종류]</p> <p>① 제55조 [전기공작물의 조사]에 의한 조사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공작물의 신설, 증설, 재공급 및 기타 변경에 따른 조사 2. 정기조사 및 재조사 3. 기타 수용가의 요청에 따른 조사 <p>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부 담으로, 제3호의 경우에는 수용가부담으 로 조사합니다.</p>	<p>—경우</p> <p>4. 당사의 전기설비에 —————— —경우</p> <p>5~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2조 [설비의 손망설에 대한 배상]</p> <p>수용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의 전기설비·전기기기————— ————— ————— —————합니다.</p> <p>1~2. [현행과 같음]</p> <p>제54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p> <p>당사와 전기설비에————— ————— —————집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55조 [전기설비 점검]</p> <p>① 당사는 일반용전기설비에————— —————점검합니다.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의————— ————— —————점검하지 아니합니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 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합니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제56조 [점검의 종류]</p> <p>① 제55조 [전기설비 점검]에 점검외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설비의—————점검 2. 정기점검 및 재점검 3. 기타—————점검 <p>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부 담으로, 제3호의 경우에는 수용가부담으 로 점검합니다.</p>	<p>○ 손망설장소 표괄적 명시 [수용장소 밖에서 발생시 의 분쟁소지 배제]</p>

규정소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제57조 [조사결과의 통지]</p> <p>① 당사는 제55조 [전기공작물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양호함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필요한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자체없이 전기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통지합니다.</p> <p>다만, 조사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조사장소에서 구두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② 당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사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에 재조사 합니다.</p>	<p>제57조 [점검결과의 통지]</p> <p>① 당사는 제55조 [전기설비 점검]에 의한 점검 ————— 전기설비의 ————— 통지합니다.</p> <p>다만, 점검결과가 ————— 점검장소에 ————— 있습니다.</p> <p>② 당사는 ————— 점검결과가 —————</p> <p>————— 재점검 합니다.</p>	
<p>제58조 [조사업무의 위탁]</p> <p>① 당사는 제55조 [전기공작물 조사] 및 제57조 [조사결과의 통지]에서 규정한 조사업무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자 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기관 [이하 “지정조사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지정조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지정조사기관은 지정조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신문에 공고합니다.</p>	<p>제58조 [점검업무의 위탁]</p> <p>당사는 ————— [전기설비 점검] 및 ————— [점검결과의 통지]에서 규정한 점검업무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에서 점검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정
	[삭 제]	
<p>제59조 [조사를 위한 수용가의 협력]</p> <p>① 수용자가 일반용전기공작물의 변경공사 [개수공사를 포함합니다.]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 자체없이 그 내용을 당사 또는 지정조사기관에 통지하셔야 합니다.</p> <p>② 당사는 제55조 [전기공작물 조사]에 의한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공작물에 대한 배선도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③ 수용가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지정조사기관은</p>	<p>제59조 [점검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p> <p>① 수용자가 일반용전기설비의 —————</p> <p>————— 한국전기안전공사에 ————— 합니다.</p> <p>② 당사는 ————— [전기설비 점검] ————— 점검업무를 —————</p> <p>————— 전기설비에 ————— 있습니다.</p> <p>③ 수용가로부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에서 점검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정 <p>[법 제38조 ⑥항]</p> <p>※ 구법에서는 동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표괄적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국한함에 따라 별도안내불요

현 행	기 정	개정사유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조사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짐검합니다.	
제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제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① [본문 생략]	① [본문 협행과 같음]	
1. 인입선・전기계기 등 수용장소내에 시설한 당사의 전기공작물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인입선 전기설비에 경우	
2. 수용가의 전기공작물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당시의 공급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수용가의 전기설비 경우	
② [본문 생략]	② [본문 협행과 같음]	
이 경우에 “물건”이라 함은 수용가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공작물과 건물・휀뚱・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물건” 전기설비와 말합니다.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61조 [수용가소유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제61조 [수용가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① 당시는 수용가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가소유의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시는 전기설비 있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 [업무용전력]	제64조 [업무용전력]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② 업무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00V・200V・220V・380V 수용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00V・220V・380V 수용가	○ 개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과 일치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 [산업용전력]	제65조 [산업용전력]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 [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미만의 수용가 또는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에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	1. 산업용전력 [갑] [현행과 같음]	

규정소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니다.</p> <p>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u>100V</u> • <u>200V</u> • <u>220V</u> • <u>380V</u> 수용가</p> <p>나~다. [생략]</p> <p>2. [생략]</p> <p>③~⑤ [생략]</p> <p>제68조 [가로등]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된 전등 또는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 표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 [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수용에 적용하며,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p> <p>1. 가로등 [갑] 가. 사용설비 1KW미만 또는 현장여건상 전기계기의 설치가 곤란한 수용에 적용합니다. 다만, 주간에도 <u>계속하여 사용하는 수용은 제외합니다.</u></p> <p>나. [생략]</p> <p>2. 가로등 [을] [생략]</p>	<p>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u>110V</u> • <u>200V</u> • <u>220V</u> • <u>380V</u> 수용가</p> <p>나~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68조 [가로등] [본문 현행과 같음]</p> <p>1. 가로등 [갑] 가. [본문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p>	
<p>나. [현행과 같음]</p> <p>2. 가로등 [을] [현행과 같음]</p> <p>제69조 [예비전력] ① 업무용전력·산업용전력 수용기가 상시 공급설비 등의 보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전력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설비를 시설하는 수용으로서 당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기술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용에 대하여 적용합니다.</p> <p>1~2. [생략]</p> <p>② 예비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합니다.</p> <p>1.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상시공급분에 대한 해당세 약종별 기본요금의 10%로 합니다.</p>	<p>○ 교통표시등과 같이 주간에도 사용하는 수용이 있는 관계로 제한규정 삭제</p> <p>나. [현행과 같음]</p> <p>2. 가로등 [을] [현행과 같음]</p> <p>제69조 [예비전력] ① 업무용전력·산업용전력 수용기가 상시 공급설비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수용자가 대체 [代替]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설비를 시설하는 수용으로서 수용자가 회망하고 당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기술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용에 대하여 적용합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예비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로 합니다.</p> <p>1.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상시공급분의 해당계약종별 요율에 예비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로 합니다. 다만,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당사가 부</p>	<p>○ 예비전력의 개념정립 - 부족전력→대체전력</p> <p>- 요율은 상시전력 계약 종별로 하되 예비전력 요금적용전력에 10%로 적용</p>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2. 전력량요금 [생략] ③ 예비전력에 의하여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는 상시공급분에 의하여 사용한 전력으로 보고 제44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감액 또는 추가」를 적용합니다. ④~⑤ [생략]	<u>당시설하는 공급설비는 기본요금을 받지 아니 합니다.</u> 2. 전력량 요금 [현행과 같음] ③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대하여는 제44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감액 또는 추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예비전력 기본요금 적용 - 수용가가 회망하고 수용가가 시설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 문맥보완 - 예비전력에 대하여는 역률불적용 - 예비전력에 의하여 사용한 전력은 상시전력에 포함, 상시전력 역률 적용
제72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 [생략] ② 수급계약서를 작성한 수용가가 당초의 수급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공급준비 완수후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초의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 설]	제72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도악용 예방으로 선의 수용가와 요금부담 형평도모
③ [생략] 제82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생략] ② 요금은 제 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의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서 당사가 수용가별로 지정한 날 [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기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③~④ [생략]	<u>③ 제 2항에 해당되는 수용가가 당사의 공급 설비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된 수급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수급계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폐지한 수급계약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기본요금을 받습니다.</u> ④ [현행 제 3항과 같음]	○ 1개월이내 삭제 - 납기기간 1개월 초과경 우 발생 • 농어촌 은행수납: 1개월 5일
	제82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은 _____ 다음날로부터 당사가 수용가별로 지정한 날 [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_____합니다. 다만, _____합니다. ③~④ [현행과 같음]	

규정소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제86조 [선수금 및 예납금]</p> <p>① [생략]</p> <p>② 임시전력 수용가에 대하여는 <u>수급개시</u> <u>제2금</u> 또는 <u>공급계속의 조건으로서 예상 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개시후의 요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합니다.</u></p> <p>③ [생략]</p>	<p>제86조 [선수금 및 예납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임시전력 수용가에 대하여는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받으며, 수급개시 이후에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수용자가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납금을 미납된 전기요금에 충당합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문액정비</p>
<p>제87조 [보증금]</p> <p>① 당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 가에 대하여는 수급개시, 제2금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또는 근저당의 설정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p> <p>1. 요금의 미납으로 제14조 [수용가의 책임]에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제1항에 의하여 수급계약의 폐지가 있었던 수용가</p> <p>2. 요금을 반복적으로 인체하여 납부하는 수용가</p> <p>3. 요금 및 기타의 체무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없이 사용자 명의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하는 수용가</p> <p>4. 수용장소, 전기사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p> <p>②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이내로 합니다.</p> <p>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수급계약 폐지일까지로 합니다.</p> <p>③~④ [생략]</p>	<p>제87조 [보증금]</p> <p>① 당시는 _____</p> <p>3개월분 [통합공과금 대상수용가는 5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_____</p> <p>_____입니다.</p> <p>1~4 [현행과 같음]</p>	<p>○ 체납폐지시 체납요금 최소한 5개월 발생</p>
<p>제90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p> <p>① 1~4. [생략]</p> <p>5. [신설]</p>	<p>② 보증금의 _____합니다.</p> <p>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_____합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0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p> <p>① 1~4. [현행과 같음]</p> <p>5. <u>동력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도적 마련</u></p>	<p>○ 사용자 명의나 무허가건물 등 수용변경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계약 폐지일까지 보증금 예치가 필요</p> <p>○ 정부시책으로 전기사용 제한시의 요금경감방법 제도적 마련</p>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②~③ [생략] 제93조 [일반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 ① 수용가가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 전력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94조 [특별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 및 제95조 [임시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를 적용하는 수용기를 제외하고는 제2절 [표준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용가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다만,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절 [설계조정 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용가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1. 철탑 [鐵塔]이나 해저 [海低] 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지중배전선로를 시설하여 고압 또는 22,900V이하의 특별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29조 [공급설비의 시설]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이외의 지역에서 수용 가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시설하여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및 신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수용가의 전기 사용신청이전에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미리 시설하는 경우 4. [생략] ② 농어촌전화축진법에 의한 수용기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표준공사비와 설계조정공사비중 적은 것을 수용가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다만, 제 1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공사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용가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③~④ [생략] 제94조 [특별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 [일반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 ① [본문 현행과 같음] 다만, _____ _____ 받습니다. 1. 철탑 [鐵塔] _____ _____ 경우 2. 지중배전선로를 _____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 _____ _____ 경우 [삭 제] 3. [현행 제 4호와 같음] ② 농어촌 _____ _____ 받습니다. 다만,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_____ _____ 받습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4조 [특별공급설비의 수용가부담공사비]	○ 당사 배전설비 공동구 참여 및 사업주체에서 단지 조성시 지중공급 요청지역 포함 ○ 제94조에서 규정 사용신청이전에 수진용량 미확정 상태에서의 설계 조정공사비 산정불가 ○ 현행 제 1항 3호 삭제에 따른 변경 ○ 문맥보완

규정소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수용가가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설비를 새로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시는 새로이 시설하는 특별공급설비에 대한 설치공사비 전액을 수용기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p> <p>1. 제37조 [전용공급설비]에 의하여 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는 경우</p> <p>2~4. [생략]</p> <p>5. [신 설]</p>	<p>수용가가 새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시는 특별공급설비에 대하여 새로이 시설하는 설치공사비 받습니다.</p> <p>1. 제37조 [전용공급설비]에 의하여 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거나 일반공급설비를 전용공급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p> <p>2~4. [현행과 같음]</p> <p>5. 공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및 신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수용가의 전기 사용신청이전에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미리 시설하는 경우</p>	<p>일반공급설비를 전용공급설비로 변경할 경우도 설계공사비 적용</p>
제101조 [표준공사비 산정거리의 측정]	제101조 [표준공사비 산정거리의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규정 제93조 단서 3호 규정하였던 설계조정공사비 적용대상의 변경임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측정기점”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합니다.</p> <p>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p> <p>가. 가공 공급수용</p> <p>[생략]</p> <p>나. 지중 공급수용</p> <p>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당사의 지중공급설비 [고압 개폐기, 공급변압기]를 측정기점으로 하되, 지중화확정지역 등 실제 지중선로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 지중화계획 기본설계도상의 공급설비 시설위치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p> <p>다만, 공급설비의 수용기속에서 첨가공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가 끝나는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합니다.</p> <p>[신 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측정기점”은 결정합니다.</p> <p>1. 저압으로 수용가</p> <p>가. 가공 공급수용</p> <p>[현행과 같음]</p> <p>나. 지중 공급수용</p> <p>(1) 당사의 지중배전선로중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급설비로 하되, 공급방법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기점을 정합니다.</p> <p>(가) 고압 개폐기</p> <p>(나) 기설 공급변압기</p> <p>(다)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並線)의 접속점</p> <p>다만, (가) 또는 (나)의 수용기속에서 합니다.</p> <p>(2) 지중화확정지역 등 실제 지중선로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 지중화공사 설계도상의 공급설비 시설위치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p> <p>(3) 제29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로서 가공 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새로이 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택 보완 ○ 지중화계획 기본설계도상에는 공급설비 시설위치가 미 확정적임 ○ 가공 전선로에서 지중선로 구성시 측정기점 결정기준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2. [생략] ③ [생략]	배전선로를 시설할 경우에는 “가”에 의한 방법으로 축정기점을 결정합니 다.	규정화 필요
제104조 [고압 또는 22,900V이하의 특별고압으 로 공급받는 수용가]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 [고압 또는 22,900V이하의 특별고압으 로 공급받는 수용가]
① 고압 또는 22,900V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하여 설계조 정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수용가부담공 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시는 새로이 시설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공사비에 서 다음에 위하여 조정한 실제 조정공사 비의 80%해당액을 수용가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다만, 제29조 [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서 수용가 회망에 따라 지증배전선로를 시설하여 공 급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공사비의 전부 를 받습니다. [이하 생략] ② [생략]	① [본문 현행과 같음]	○ 지하공동구 및 공단, 주택 단지 신도시개발사업 주체에서 지증전선로로 시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 행합니다. ②~③ 항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 행합니다.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4월 14일부터 시 행합니다.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성과조치] 제63조 「주택용 전력」 제3항에 규정된]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수용 에 대한 요금은 1990년 5월 겹침분부터 개 정된 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규정소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p> <p>② [경과조치] 제10조 [수급계약기간] 제4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잔액을 감소하는 수용가에게 적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② [경과조치]</p> <p>1. 제65조 [산업용전력] 제5항의 단서 1종 여름철 일요일의 주간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을 저녁시간대에 계량하기 위한 타이스 위치 설치시키자는 사용시간 비례 등 별도의 산정 방법에 의해 사용전력량을 조정합니다.</p> <p>2. 제74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수용가의 요금 적용전력은 1991년 7월 겸침일분부터 시회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② [경과조치] 제72조 [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제3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수급계약을 폐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p>	